

새봄중학교 학생생활규정 (발췌)

연습용 가상 자료

2026. 3. 1. 개정 · 연습용 가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새봄중학교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장 출결

제4조(지각·조퇴) ① 지각·조퇴·외출은 보호자 연락 후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질병으로 인한 조퇴는 보건교사의 확인을 함께 받는다.

제5조(결석계) 결석한 학생은 등교 후 5일(수업일 기준) 이내에 보호자 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.

제6조(체험학습)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하며,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.

제3장 휴대전화

제9조(휴대전화 사용) ① 수업 시간에는 교사의 교육 목적 지시가 있을 때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.

② 1교시 시작 전 학급별 보관함에 보관하고 종례 후 돌려받는다.

제4장 용모

제12조(교복) 동복·하복 교체 기간(5월, 10월)에는 두 가지를 모두 착용할 수 있다.